

의안번호	2203802
의 퇴 인	이종배의원
회 답 일	2024. 11. 11.
추계번호	24D3598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에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호수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억 5,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9억 5,000만원(연평균 3억 9,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6조)	150	150	150	150	150	750	150
호수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안 제30조)	1,200	—	—	—	—	1,200	240
합 계	1,350	150	150	150	150	1,950	390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의 내용에 ‘내수면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등을 위한 문화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무규정
2	안 제16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는 친환경 개발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국내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국가는 지정·고시된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2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국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출연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함	의무규정
5	안 제23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30조(호수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호수진흥사업의 시행방식 및 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호수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38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국가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정보, 주택수리·임차비용 지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41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제42조(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국가산업단지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46조(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전문교육연구기관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부설기관으로 지역 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47조(유망 신 산업·기술 창 업기업 육성) 및 제48조(유망 신 산업 · 기술 창업기업 부담 금 면제)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는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 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의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등의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 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 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면제함	재량규정
11	안 제49조(서비 스산업 활성화 지원)	-국가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 음	재량규정
12	안 제50조(바이 오헬스산업의 진 흥)	-국가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및 강화, 기업의 창업·성장 단계 별 전주기 지원, 바이오 헬스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지 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 립·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57조(농어 촌유학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시장·군 수·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발전중 합계획의 수립)	-	안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할 중부내륙연계발 전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내수면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등을 위한 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려는 것이나, 기존의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내에서 수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는 예상되지 않음
2	안 제16조(환경 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

3	안 제21조(조세의 감면)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 등 조세 감면규모 및 국내외 입주기업과 소속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금보험료의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4	안 제2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	정부 출연금 등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5	안 제23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보조율 인상 범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규모를 추정 곤란
6	안 제30조(호수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	-
7	안 제38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	국가와 시·도가 시행하게 될 일자리 알선 정보, 주택수리·임차비용 지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등 사업의 예산규모 추계 곤란
8	안 제41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제42조(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에 대한 특례)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조성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산업진흥단지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고,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모를 추정하기 곤란
9	안 제46조(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전문 교육 연구기관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선정 지역과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전문 교육 연구기관과 지역 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연구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 추정 곤란
10	안 제47조(유망신산업·기술창업기업 육성) 및 제48조(유망신산업·기술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사업의 규모 및 개발부담금 면제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11	안 제49조(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	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책의 내용·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12	안 제50조(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	×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및 강화, 기업의 창업·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 바이오 헬스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등의 시책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13	안 제57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¹⁾의 시·도지사에게로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 등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추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안 제16조) 및 호수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안 제30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
- 호수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비용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인 유사 연구·용역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5.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 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 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 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예천군

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안 제16조)

- 안 제1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친환경 개발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개최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²⁾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환경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³⁾ 대상 사업의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상 건별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2022~2023년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연도별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연도별 건수: 2022~2023년

-
- 2)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단위: 건)

구분	2022	2023	평균
환경영향평가	21	33	27
전략환경영향평가	129	129	129

자료: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제출자료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개최 횟수는 연간 150회로 가정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5명, 1인당 참석 수당 단가는 20만원⁴⁾으로 가정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10명⁵⁾ 중 민간위원의 비율은 약 50%임
 - 이때, 연간 대상 건수와 민간전문가의 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대상 건수(A, 건)	150	150	150	150	150	－
민간전문가 수(B, 명)	5	5	5	5	5	－
참석 수당 단가 (C, 백만원/명·건)	0.2	0.2	0.2	0.2	0.2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150	150	150	150	150	750

주: 대상 건수, 민간전문가 수 및 수당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호수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안 제30조)

□ 안 제30조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호수진흥사

-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업의 시행방식 및 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호수진흥지구에 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연구·용역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인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 첫해인 2026년에 8개 시·도⁶⁾에서 호수진흥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인 1억 4,400만원(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을 참고하여 호수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1억 5,0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8개 시·도에서 호수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억원으로 추계됨

[표 4] 호수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시·도(A, 개)	8	—	—	—	—	—
연구·용역 단가(B, 백만원)	150	—	—	—	—	—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1,200	—	—	—	—	1,200

주: 연구·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작성

다. 추계 결과

□ (일부 추계)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에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호수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9억 5,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됨

6)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6조)	150	150	150	150	150	750
호수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안 제30조)	1,200	-	-	-	-	1,200
합 계	1,350	150	150	150	150	1,9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